심의위원회 규정

大韓柔道會

대한유도회 심의위원회 규정

1950년 12월 1일 제정 1966년 4월 8일 개정 1968년 2월 6일 개정 1971년 11월 9일 개정 1973년 7월 13일 개정 1975년 10월 29일 개정 1977년 2월 5일 개정 1984년 2월 20일 개정 1989년 9월 1일 개정 1992년 1월 9일 개정 1993년 6월 5일 개정 1997년 12월 19일 개정 1998년 4월 16일 개정 2002년 1월 16일 개정 2006년 1월 9일 개정 2010년 2월 17일 개정 2013년 3월 11일 개정 2015년 1월 16일 개정 2016년 1월 19일 개정 2016년 3월 7일 개정 2016년 5월 28일 개정 2017년 11월 5일 개정 2018년 1월 18일 개정 2018년 3월 1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위원회는 대한유도회(이하 본회라 칭함) 심의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위원회는 본회정관 제30조에 의하여 구성하고 유도승단에 관한 규정 검토 및 제반사항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임무)

- 1. 심의 1반 위원은 전국의 7단 이상의 고단자 중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6단 이상의 승단을 심의한다.
- 2. 심의 2반 위원은 각 시.도지부 유도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및 심의위원장)중 6단 이상의 고단 자로서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속 시.도지부장이 1명씩 추천하며, 본회 회장 이 위촉하고, 5단 이하의 승단을 심의한다.

제4조(임원)

본위원회는 2개의 반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1명
- (3) 간사 2명(각반 위원 중 1명)
- (4) 위원 30명(위원장,부위원장,간사포함)이내
- 1.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2반의 간사는 위원장이 1명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1반은 전무이사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2017.11.05 이사회 의결)
- 4.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가.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가급적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한다.
- 나.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항에 의한 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의 추천과 회장의 승인을 통하여 실정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 다.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라. 본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5.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 중인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 6. 9단 이상의 승단 심의시 심의대상자의 소속 시도지부 심의위원은 제안 설명을 할 수 없다.

제5조(임기)

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시.도 추천위원도 임기에 준하여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본위원회 위원은 승단심의가 유도의 보급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명심하고 공평무사하고 편견 없는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 또는 진행 경위에 대하여 일체 비밀을 지킬 의 무를 갖는다.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 1.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2. 정기 회의는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소집하여 승단 심의를 실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 3. 정기 회의 중 연 2회(5월, 11월)는 실기심사(5단, 6단)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8조(성원 및 의결)

위원회는 각 반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승단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9단 승단 심의에 한하여 1반 출석위원 8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회장의 승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권한과 의결 범위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와 회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4장 심의 위임

제10조(시.도지부장 위임)

- 1. 본회의 각 시.도지부장은 관할지역에서 수련중인 4단 이하의 실기응시자에게 본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응시자의 기본적인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본회가 인정하는 해외지부장은 소속 회원 중 6단 이하의 실기응시자에게 본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단을 인정 받을 수 있다.(단, 응시자의 기본적인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각 시도지부 및 해외지부장은 관할지역에서 수련중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본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에 대한 심의 상신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부적격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제11조(학교장 위임)

1.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유도를 정규 과목으로 인정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 중 4단 이하의 응시자에게 본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소속 시도지

부의 심의를 거쳐 본회 회장으로부터 단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2. 유도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의 학생 중 유도지도자로서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단 이하에 한하여 제19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승단 소요연령 및 연한 을 단축 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지도사범 위임)

- 1. 1급 공인지도사범은 그가 지도하는 소속도장 2단 이하의 실기응시자에게 본회 심의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 후 해당 시.도지부 정기 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단, 응시자의 기본적인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2급 공인지도사범은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초단 이하의 응시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제13조(회장의 권한)

- 1. (명예단)본회 회장은 유도발전에 기여한 저명인사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단까지의 명예단을 수여할 수 있다.
- 2. (공로단)본회 회장은 유도보급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단까지의 공로단을 수여할 수 있다.
- 3. (추서단)본회 회장은 유도보급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5단 이상 유단자가 사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단급 승단을 추서할 수 있다.

제5장 심의 신청

제14조(신청단체)

- 1. 승단신청자는 본 규정 제15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도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시.도지부의 장은 승단신청자로부터 구비서류를 접수받아 본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여 본회에 응시자의 명단을 작성, 첨부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3. 승단신청자가 현주소지가 아닌 타 시도지부 또는 타 소속을 통하여 심사 원서를 제출 할 때에는 만6 개월 이상 해당 시도지부 또는 해당 소속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제14조 제1,2,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서 명시한 명예단, 공로단, 추서단에 한하여,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본회에서 직접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2017.11.05 이사회 의결)

제15(구비서류)

각급 승단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유도단급심사원서(본회 소정 양식, 별첨2) 1부
- 2. 주민등록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3. 지도자 및 심판강습회 수료증 사본 각 1부 (시도지부 발행)-3, 4단 승단 신청자 (본회 발행)-5, 6, 7, 8단 승단 신청자
 - * 주 : 1.수료증은 승단신청 해당연도부터 3년까지 유효(해외지부 및 외국인은 면제함.)
- 4. 기타 증빙서류

제16조(유의사항)

심사원서의 기재내용과 첨부한 각종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승단이 결정된 후에라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그 승단을 취소하고 본인, 지도자, 추천자 및 추천단체를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심 의

제17조(심의구분)

승단심의는 크게 실기심사와 서류심사로 구분한다.

제18조(구비요건)

- 1. 본 규정에 표시된 최소연령, 수련연한 등은 기본 자격 요건을 표한 것이기 때문에, 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1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바 이외에는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2. 품성이 불량한 자 또는 유도정신에 역행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승단 할 수 없으며, 승단 이후에도 그 정도에 따라 승단을 취소 또는 삭단 할 수 있다.
- 3.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승단 응시를 할 수 없다.
- 4. 3단 이상 신청자는 매 단급마다 본회 또는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 5. 유도를 수련하는 사람 중 만14세 이하에게는 '소년 초단', '소년 2단, '소년 3단'을 수여할 수 있다. 또한, 소년단을 취득한 사람은 승단 최소연령(초단:15세, 2단:16세, 3단:18세)에 도달하면 그대로 성인 초단, 2단, 3단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위 단에 신청 할 수 있다.(2017.11.05 이사회 의결)
- 6. 6단 이상 신청자 중 불합격자는 1년 이내에 다시 승단을 신청할 수 없다.(실기 신청자는 제외)
- 7. 본회에서 단을 수여 받은 자가 본회가 인정하지 않은 단체(유도인을 대상으로 한)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승단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8.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자는 승단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단자의 경우 종합평가표 10항에 의거 필수 사항 적용)

제19조(승단최소연령)

승단 최소 연령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승단하는 단	9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초단	소년초단 ~ 소년3단
죄소연령 (세)	65세	55세	46세	37세	29세	23세	18세	16세	15세	14세 이하

단, 소년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최소연령을 1회에 한하여, 1세 낮춘다.

*2단: 소년 초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15세 이상

*3단: 소년 2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17세 이상

*4단: 소년 3단에서 승단한 자에 한하여 22세 이상

제20조(실기심사 응시연한)

실기심사에 의한 승단신청은 자신의 현 보유단 승단 후 다음의 수련연한이 경과되어야 하며, 실기심사는 제10조에 의거하여 4단 이하는 시도지부, 5단과 6단은 본회에서 각각 실시한다.

심사단위	6단	5단	4단	3단	2단
소요연한	6년	4년	3년	2년	1년

※ 본 규정 제11조를 제외한 초단 승단 희망자의 경우 본회 승단 심사일을 기준으로 최소 만 6개월 이상 수련한 자에 한하여 실기 심사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제21조(서류심사 응시연한)

제24조에 의한 평가결과 최소 점수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자신의 현 보유단 승단 후 다음의 수련연한이 경과되어야 서류심사에 의한 승단을 신청 할 수 있다. 단, 최소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제25조에 의한 소요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심사단위	9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소요연한	10년	9년	9년	9년	8년	6년	5년	4년
최소점수	50)점	30)점	20)점	10)점

제22조(실기심사 배점)

실기심사의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단,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처리하며, 점수 배점표를 첨부해야 한다.)

응시단	5단, 6단	3단, 4단	2단 이하 (소년초단, 2단)	
경 기	30	50	60	
본	50	30	20	
이 론	20	20	20	

제23조(본 심사)

실기응시자의 "본"심사는 다음 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응시단	5단, 6단	3단, 4단	2단 이하
증계단	9년, 0년	(소년 3단)	(소년초단, 2단)
	메치기 본	메치기 본	메치기 본
평가하는 본	굳히기 본	굳히기 본	
경기에는 돈	부드러운 본		
	되치기 본		

(단, 5~6단은 4가지 본 중 심사위원 지정 2)

제24조(서류 심사 배점 및 평가)

서류심사에 의한 승단 신청자의 심의는 〈별첨2〉 '승단 심의 대상자 종합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1. 시도지부 심의위원회 평가: 종합평가 점수는 승단신청자의 첨부된 서류를 근거로 각 시도지부 심의 위원회에서 1차 점수를 산출한 후 승단신청서에 그 점수를 기재한다.
- 2. 대한유도회 심의위원회 평가: 시도지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승단신청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 여부와 합격 여부를 결정하되, 종합평가표 만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평가미달자의 소요연한)

제24조에 의한 종합평가점수가 최소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제21조의 규정 적용 예외자로 구분하며, 다음 연한을 경과하여야 승단 신청이 가능하다.

승단하는 단위	9단	8단	7단	6단	5단	4단	3단	2단
경과연한	8단승단후 20년이상	7단승단후 18년이상	6단승단후 18년이상	5단승단후 18년이상	4단승단후 16년이상	3단승단후 12년이상	2단승단후 10년이상	초단승단후 8년이상
최소 점수	50점		30점		20점		10점	

제26조(외국인 승단)

외국인으로 국제유도연맹 가맹국유도회에서 수여한 단위는 그 증빙이 인정되면 본회로부터 동등한 단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단을 교부받은 후 국내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하고 자격이 갖추어지면 승단을 신청 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27조(단증교부)

승단심의에 합격하여 소정의 수속을 마친 자는 본회에서 발행한 단증을 교부받는다.

제28조(단 대장 관리)

- 1. 단 수여 대장은 본회가 문서보관지침에 준하여 보존 관리한다.
- 2. 제13조의 명예단, 공로단, 추서단 등은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승단심의수수료)

승단심의 수수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별첨1참조)

제30조(재심 청구권)

본 위원회에서 승단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본회 회장이 이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거부 및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부 칙

제31조(시행일)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0년 2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3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1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개정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01월 1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심의위원회의 개정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03월 0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05월 2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7년 11월 05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1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8년 3월 1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승단 심의 대상자 종합 평가표

서류심사에 의한 승단 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종합 평가표에 의거한 평가 결과를 참고로 하여 승 단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승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종합 평가표에 의한 결과는 승단신청자의 기본적인 자격여부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1. 항목별 점수 배분 및 평가기준

	충	п			평가	점수		
	항	목	10점	8점	6점	4점	2점	-2점
		수련연한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상	
1	수련경력	현재 수련상황					수련중	미수련중
		강습회 수료	10회 이상	8회 이상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0회
		선수등록기간 체육관등록기간	20년 이상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상	
		현재 선수활동	국가대표	후보선수	청소년대표	꿈나무	선수활동중	
2	선수경력	국가대표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후보선수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청소년대표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꿈나무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2	이사건크	국제대회 (장애인, KATA포함)	올림픽 세계선수권	종합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국제연맹 주최대회	아시아연맹 주최대회	기타 국제 대회	
3	입상경력	국내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대회 (생활체육포 함)	시도대회	대회 참가	
		대한유도회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4	임원경력	시도유도회		12년 이상	8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국제대회	IJF임원	JUA임원	단장	지도자	임원	
5	심판경력		올림픽 심판	IJF심판 자격 보유	JUA심판 자격 보유	1급 심판 자격 보유	2급 심판 자격 보유	미활동
6	지도경력		국가대표	후보/청소 년/꿈나무	엘리트/ 사설체육관	1급 지도자 자격 보유	2급 지도자 자격 보유	
		훈포장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포장 정부표창	
7	수상경력	유공자 표창		대한민국 체육상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 회	대한유도회 장애인유도회	시도지부 기관표창 등	
0	성기거리	유도 서적 발행	단독 10권	단독 5권 공동 10권	단독 3권 공동 5권	단독 2권 공동 3권	단독 1권 공동 2권	
8	연구경력	유도 연구 논문	단독 15편	단독 10편	단독 5편 공동 10편	단독 2편 공동 5편	단독 1편 공동 3편	
9	창단경력	엘리트 팀 및 사설체육관	팀 창단	사설체육관 개관				팀/체육관 해체
	하시거의	국제대회/행사	<u>5</u>	<u>4</u>	최소 3회			
10	<u>참여경력</u> (최근 3년)	전국대회/행사	<u>15</u>	12	<u>최소</u> <u>6회(필수)</u>			* 고단자 필수 <u>사항</u>

		소속시도대회/행사			<u>최소</u> 12회(필수)			
		발전 기금 및 장학금 기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소요연한 경과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미달
	11 기타	최소연령 경과	20세 이상	15세 이상	10세 이상	5세 이상	3세 이상	미달
11		도서 산간 및 오지, 해외거주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승단이 필요한 특수직종		10년 재직	5년 재직	2년 재직	1년 재직	

^{**} 승단신청시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 미첨부시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